#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11 발의연월일: 2020. 12. 22.

발 의 자:전혜숙·이병훈·홍정민

안민석 · 고용진 · 설 훈

안호영 • 우원식 • 윤후덕

신현영 · 한준호 · 진성준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은 현장지휘센터 장 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상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보호조치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 고 효과적인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5조의2, 제45조 및 제46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배포"를 "배포·복용지시"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여 갑상샘 방 호 약품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조치 신 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지역· 연령의 주민 또는 약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갑 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하려는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포 대상자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 보관방법.

부작용, 교환·반납기준 및 방법 등을 설명·안내하고 해당 내용이기재된 자료를 갑상샘 방호 약품과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약품의 비축·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안내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및 사전배 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 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 ·관리, 사전배포, 설명·안내,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본부장의 결정사항 시행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23조·제44조·제48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보완
- 8.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

의 확보 • 폐기 지원

9.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 에 관한 설명·안내 지원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지원과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페기
- 2.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배포하는 갑상샘 방호 약 품에 관한 설명·안내
- 3.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 교육
- 4.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훈련
-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한)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항) ①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 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 배포・복용지시-----의 결정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 <신 설> 축・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 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국내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 ·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의 주민

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지역·연령의 주민 또는 약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포 대상자에게 갑상샘 방호약품 보관방법, 부작용, 교환·반납기준 및 방법 등을 설명·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갑상샘 방호약품과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관리, 사전 배포 및 설명·안내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 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관리, 사전배포, 설명·안내,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본부장의 결정사항 시행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23조·제44조·제48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 저 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 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_ 제13 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 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5조(업무의 위탁) ①
1. ~ 6. (현행과 같음)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u>보완</u>
8.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
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9.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

② ~ ⑤ (생 략)

지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와 제37 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재 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필요 한 지원과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 호 약품에 관한 설명・안내 지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 1.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 1항에 따라 비축 · 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 보・폐기
- 2.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 3항에 따라 배포하는 갑상색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 • 안내
- 3.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에 따 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 교육
- 4.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 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훈련
-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 ② (현행과 같음)